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78

발의연월일: 2024. 8. 9.

발 의 자:김남근·강준현·강훈식

김남희 · 김영배 · 김용만

김 윤・김 현・김현정

모경종 • 민병덕 • 박선원

박홍배 • 박희승 • 복기왕

송재봉 • 신장식 • 신정훈

오세희 • 위성곤 • 윤건영

이강일 • 이광희 • 이기헌

이훈기 · 임미애 · 장종태

정준호 · 정진욱 · 조인철

채현일 • 추미애 • 허성무

황명선 · 황정아 의원

(35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티몬, 위메프가 장기간 적자로 자본 잠식상태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2차례 에 걸쳐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 해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탁을 해 놓도록 하였 으나, 티몬과 위메프가 이러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했음에도 불구하 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감독해태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이 다른 해외 기업 인수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방만하게 자금이 운용되기도 하고 급기야 2024년 7월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음.

한편, 금융감독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경영개선협약과 달리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을 별도 신탁하지 않고 있고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감독원이 대상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경영지도 기준을 정하고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다른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제재나 감독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는 금융감독원이 허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본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고(제3항),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취소의 행정처분(제4항)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지도기준이나 경영개선협약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제나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에서도 그 매출 규모나 이용 횟수가 많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나 판매자의 피해가 큰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등록 전자금융업

자에 대해서는, 허가받아 영업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경영지도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본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명령,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취소의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티몬 ·위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전자금융업 자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 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조 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경영기도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4항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
영지도) ① ~ ④ (생 략)	영지도) ① ~ ④ (현행과 같
	음)
<u> <신 설></u>	⑤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연평
	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상태가 제
	2항의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
	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제3항의 조치를
	<u>요구할 수 있다.</u>
<u><신 설></u>	⑥ 제5항의 전자금융업자의 재
	무상태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
	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
	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
	로 인하여 제2항의 경영지도기
	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
	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4항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